

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증

번호 :

협의회명 :

주사무소 :

대표자 :

품목 또는 업종 :

결성일 :

위 협의회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38조의 결성 및 조직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, 같은 규정 제138조제3항에 따라 의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국세청장